



# 뉴욕 시에서는 이전 임금이 다음 임금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.

## 직업 구직자를 위한 안내 자료: 구직자의 임금 내역 질의 금지

2017년 10월 31일부터 뉴욕 시 고용주는 고용 과정에서 귀하의 임금 내역에 관해 묻거나 이를 참고할 수 없습니다. 이 법률은 여성과 유색인종 대한 임금 불평등의 악순환을 저지하고 고용주로 하여금 자격을 바탕으로 보상을 설정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### Q. 보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?

A. 뉴욕 시에서 신규 고용 대상인 대부분 구직자는 해당 직위가 정규직, 비정규직 또는 인턴십이든 관계없이 보호받습니다. 직원이 없는 독립 계약자도 보호받습니다.

### Q. 비보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?

A. 본 법률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- 현재 직장에서 내부 보직 변경 또는 승진을 원하는 구직자.
- 단체 교섭 협약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공 부문 구직자. 그러나, 시 기관은 2016년 11월 4일 서명된 시장의 행정 명령 21에 따라 구직자의 임금 내역에 관해 묻거나 이를 참고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.

### Q. 어떤 행위가 금지됩니까?

A.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- 예를 들어 구직 이력서에 현재 또는 이전의 임금 또는 혜택에 관해 질문하거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.
- 현재 혹은 이전 고용주 또는 직원에게 구직자의 현재 또는 이전 임금 또는 혜택에 관해 질문하는 행위.
- 현재 또는 이전 임금이나 혜택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공공 기록에서 확인하는 행위.
- 보상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 또는 이전 임금이나 혜택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는 행위.

### Q. 금지되지 않은 행위는 무엇입니까?

A.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.

- 해당 직위에 대한 예상 임금, 임금 범위, 보너스 및 혜택에 관한 발언을 하는 행위.
- 임금, 혜택, 보너스 또는 수수료 구조에 대한 기대 또는 요건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.
- 수익, 창출되는 이익, 판매, 생산 보고서 또는 사업 자료와 같은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의 업무 생산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에 관해 질문 하는 행위.
- 근로 이력, 책임 또는 성취 내용과 같은 임금 외 정보 확인을 위해 구직자의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에게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검색하는 행위. 그러나, 이 과정에서 현재 또는 이전 임금 또는 혜택을 우연히 알게 되더라도 고용주는 임금 또는 혜택 결정 시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없습니다.
- 연방, 주 또는 지방법에 따라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현재 또는 이전 임금이나 혜택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.
- 인터뷰 절차 동안 구직자가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또는 이전 임금이나 혜택을 확인하고 고려하는 행위.

### Q. 위반이 적발된 고용주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?

A. 손해배상, 벌금 납부 및/또는 의무 훈련 및 게시 요건과 같은 추가적인 적극적 완화 노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
임금 내역에 관한 차별을 받으신 경우,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311번으로 전화해 뉴욕 시 인권위원회에 연락하거나 인권위원회 인포라인에 212-416-0197번으로 직접 전화하십시오. 자세한 내용은 [NYC.gov/HumanRights](http://NYC.gov/HumanRights)를 참고하십시오.

#SalaryIsHistoryNYC

**NYC** Commission on Human Rights